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물류 지원을 통한 수출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 사업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내 평택 주소 확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붙임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

※ 본 사업은 중동지역 위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연간 지원사업 수혜 제한기준과 별도로 적용함. 이에 따라 당해 연도 3개 지원사업 수혜기업도 본 사업 지원이 가능함

□ 지원내용

구분	모집규모	지원한도
국제특송	40개사 내외 ※ 선착순 모집	기업당 최대 4,500천원
포워딩업체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500천원 지원

□ 지원방식 : 사후정산 방식

※ 공고일 이전 집행분(2026년도 발생 건) 포함 소급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여러 건 합산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제특송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운송비 지원
포워딩업체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추가할증료 등 수출 물류 전반 비용 지원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목록에 운송·물류 등이 기재된 포워딩업체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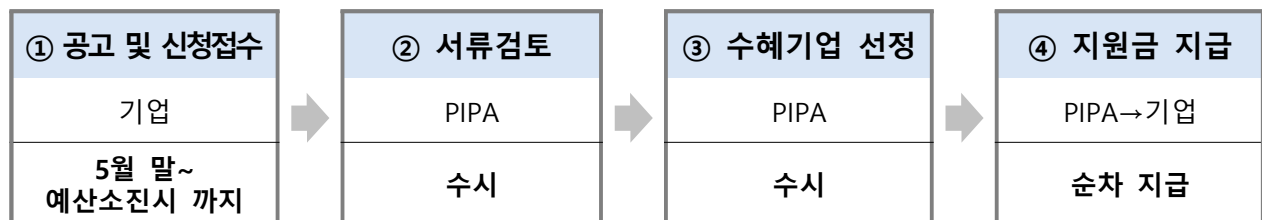
※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 지원조건

지원조건	지원제외						
○ '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 수출자, 구매자 정확히 명시한 건 ○ 인코텀즈 C, D, F 조건 ○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	○ 해외물류비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후,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예시</td><td>000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td></tr> <tr> <td>신고번호 : 12345-12-123456A</td></tr> <tr> <td>평택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td></tr> <tr> <td></td><td>신고번호 : 12345-12-123456A</td></tr> </table>	예시	000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 12345-12-123456A	평택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 12345-12-123456A
예시	000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 12345-12-123456A						
	평택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 12345-12-123456A						

※ 인코텀즈 F 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포워딩업체 이용건만 지원 가능

□ 추진절차



※ 위 일정은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3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물류비 집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적정성 및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및 제출 완료 기업
-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04

신청 및 접수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선착순) 2026. 6. 1.(월)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6. 6. 1.(월) 9:00 이후 온라인 접수 건에 한하여 인정
- 신청방법 : ‘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재)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31-8029-9348)
- 제출서류 : PDF 파일로 제출

구분	번호	서류명	비고
공통 서류	1	신청서	붙임 1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 2
	3	확약서	붙임 3
	4	사업자등록증	-
	5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6	(해당 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제외(현재 유효사항만 포함)
	7	중소기업확인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8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9	수출신고필증	유니패스에서 발급
	10	인보이스(거래명세서)	물류비 인보이스(거래명세서) 제출
	11	B/L 또는 AWB	-
	12	납부증빙서류	송금(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포워딩업체 이용 시 추가 제출			
포워딩 업체	13	(포워딩업체)사업자등록증	업체/종목 - 운송·물류 관련 내용 필수
	14	(포워딩업체)통장사본	기업->포워딩업체 이체 시 계좌번호 확인 용

◎ ‘평택산업진흥원 사업신청시스템(pipabiz.or.kr/icu)’ 제출서류 업로드 방법

① 각 서류에 파일 번호 기재

- 파일명 : 1. 신청서.pdf
-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pdf
- 3. 협약서.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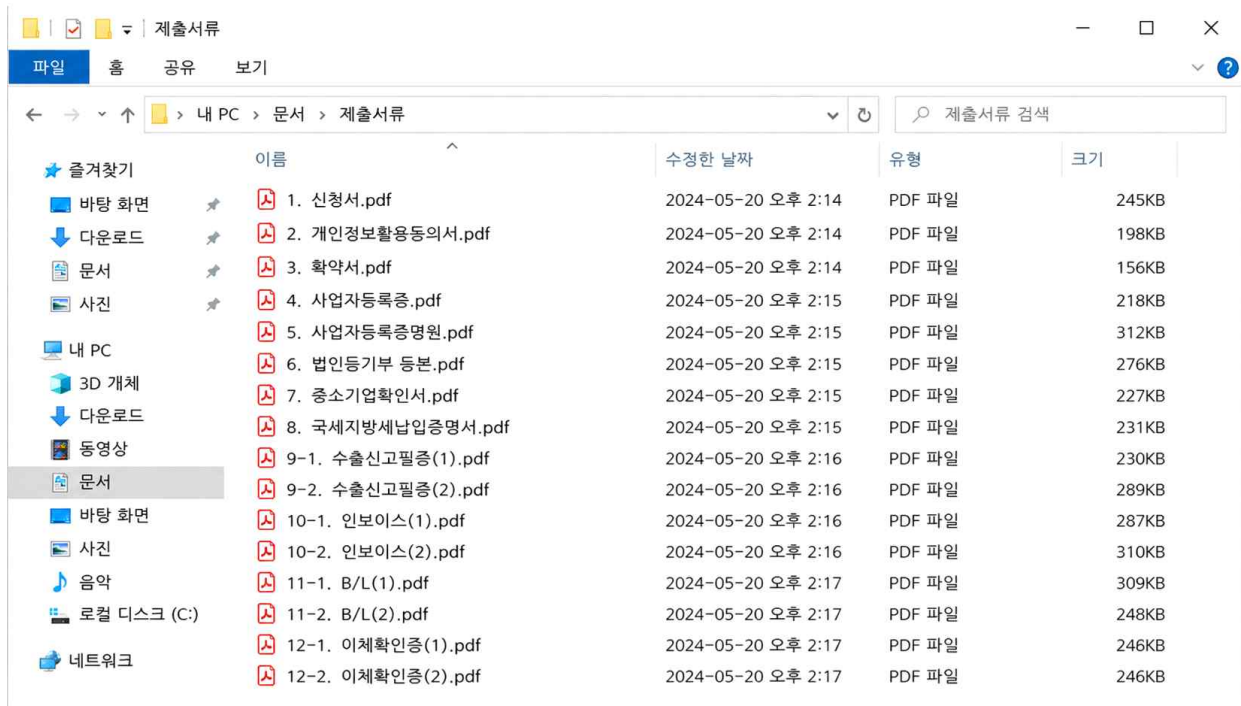
② 1번~13번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할 것

- 파일명 : 물류비 지원사업_기업명.zip

※ 수출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수출 건별로 정리할 것

예) [수출신고필증(1) / 인보이스(1) / B/L(1) / 이체확인증(1)]은 동일 수출건의 증빙서류로 1세트임
 [수출신고필증(2) / 인보이스(2) / B/L(2) / 이체확인증(2)]은 동일 수출건의 증빙서류로 1세트임
 => 총 2건

< 수출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예시 이미지(서류 압축 전) >



③ 시스템에 압축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란) 신청서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 (기타서류란) 그 외 서류 PDF 파일 변환 후 압축하여 알집 업로드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을 시, 파일을 나누어 압축 및 업로드

ex) 물류비 지원사업(1)_기업명.zip

물류비 지원사업(2)_기업명.zip

□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당해연도 선정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함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제출서류의 누락,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 및 확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신청서류 외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결과 금액이 상이할 경우, 제출서류 및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
-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업 수요,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지원제외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한 경우
-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는 지원 제외
-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일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붙임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신설 2021.03.04.>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